

(비공식 번역본)

투자위원회 고시
제12/2565호
기존 생산기지의 유지 및 확장 방안

투자 촉진 정책과 기준에 관한 2022년 12월 8일자 투자위원회 고시 제8/2565호의 내용과 관련하여, 투자위원회는 태국을 생산 기지로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기존의 대규모 사업운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투자촉진법 제16조, 18조 31조, 31/1조 및 35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을 고시한다.

1. 모든 팡왓¹(province)은 투자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
2. 신청자는 15년(2008년~2022년) 동안 투자청 촉진 프로젝트를 3개 이상 운영한 자로, 동일한 법인에 속한 기존의 투자청 촉진 업체여야 한다. 프로젝트 승인 단계에서 토지가격과 운전자본을 제외한 투자금액은 1백억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3. 5억바트 이상(토지가격과 운전자본 제외)으로 투자를 확대한 프로젝트는 기존 규정에 추가하여 다음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단, 투자청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활동으로 규정한 활동은 제외된다.
 - 3.1 법인 소득세 추가 면제 기간 3년. 단, A1 그룹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총 면제 기간이 1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2 A1과 A2 그룹에 속한 활동은 순이익에 대한 법인 소득세를 법인소득세 면제 만료일로부터 5년간 정상 세율에서 50% 감면받을 수 있다.
 - 3.3 A3, A4 및 B 그룹에 해당하는 활동의 법인소득세를 3년간 추가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법인소득세 면제를 받는 총 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법인소득세 면제를 총 8년간 받는 프로젝트의 경우, 제35(1)조에 따라 추가적인 법인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5. 이 방안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 프로젝트는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방안에 해당하는 추가 혜택을 신청할 수 없다.
6. 신청서는 2023년 마지막 근무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본 고시문은 2023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¹ 태국의 행정구역으로 우리나라의 도(道)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태국에는 총 76개의 팡왓이 있다.

고시일 2022년 12월 8일

쁘라웃 찰오차 장군(General Prayut Chan-o-cha)

(Prayut Chan-o-cha)

총리

투자위원회 의장